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860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에서 기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지역활성화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11. ~ 10. 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2건(반영)

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있는 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 고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

⇒ 안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 성별을 고려하여 ~” 구성함을 명시

6)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공청회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답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인·허가 의제 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

지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협의위원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국장, 유관 기관·단체의 임직원
2. 위촉직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심의사항)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의·의결)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요청 기간의 범위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농지, 산림,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인원은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단과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단과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과 인가·허가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제25조(우선지원 대상)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공청회의 시기, 개최 절차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 9.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청회)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법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의 기능과 구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장 민 병 룡